



## 컴퓨터 구매 고객에게 정비 목적으로 제공한 설계도의 영업비밀 여부에 관한 판결

07

Data General Corp v. Digital COmputer Controls, Inc, 297 A.2d 433 (1971)

###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뉴캐슬, 델라웨어 주 에쿼티 법원	사건번호	(기록 없음)
판결 일자	1971.12.13.	판결 결과	전부 기각
원고 (피항소인)	데이터 제너럴 (Data General Corporation), 델라웨어 주 회사		
피고 (항소인)	디지털 컴퓨터 컨트롤즈 (Digital Computer Controls Inc), 델라웨어 주 회사, 존 엔. 에클리 (John N. Ackley)		
참조 법령	Restatement, Torts § 757, comment b. <sup>1)</sup>		
참조 판례	Schulenberg v. Signatrol, Inc., 33 Ill.2d 379, 212 N.E.2d 865, cert. denied 383 U.S. 959, 86 S.Ct. 1225, 16 L.Ed.2d 302; Schulenburg v. Signatrol, Inc., 33 Ill.2d 379, 212 N.E.2d 865, and Tabor v. Hoffman, N.Y., 118 N.Y. 30, 23 N.E. 12.		
영업비밀	개인용 컴퓨터 설계도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설계도, 공개금지약정, 비밀성		

### 02 사건 개요

원고는 노바(Nova)라는 소형 컴퓨터를 개발하여 판매하면서 스스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추가 비용 없이 '노바 1200' 컴퓨터의 설계도 또는 논리도를 제공하였다.

위 설계도에는 구매계약서와 함께 공개금지약정(non-disclosure clause)하에 제공되었고, 모든 도면에는 원고의 전매정보이며 구매자가 생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표식이 부착되어 있다. 그러나 '노바 1200'은 특허 등록된 제품이 아니며 설계도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1) 원문 <http://www.lrdc.pitt.edu/ashley/RESTATEM.HTM>

---

피고 회사의 회장인 피고 애클리는 미니컴퓨터 시스템(Mini Computer Systems, Inc.)사가 원고로부터 구매한 '노바 1200' 컴퓨터의 정비를 돕는 과정에서 원고가 제공한 설계도를 입수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경쟁 제품을 만들었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위 설계도에 포함된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청구하였다.

---

### 03 주요 쟁점

원 고



피 고

원고가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구매자에 대한 설계도 공개는 장치의 올바른 정비를 위해 필요했고,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들이 도입되었다.

연방 특허법과 독점규제법에 따르면 대중에게 제공된 제품 내의 영업비밀은 보호될 수 없다.

원고가 비밀성 유지를 위한 보호 장치 없이 고객에게 설계도를 제공했다.

### 04 판결 요지

연방특허법과 독점규제법을 적용한 판례는 영업비밀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적용될 수 없다.

원고는 설계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설계도를 제공하지 않았고, 설계도를 제공받은 고객과 비밀유지약정을 했으며, 그 설계도가 원고의 전매 정보로서 사용이 제한된다는 표식을 부착하였으므로 비밀성 유지를 위한 예방책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피고의 약식판결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비밀성 유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였으나,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 이에 원고의 예비적 금지명령 청구 역시 기각한다.

---

## 05 Key Point

---

고객에게 영업비밀을 공개하더라도 비밀유지약정을 하거나 비밀표시를 하는 경우 여전히 비밀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비밀 보호 요건으로서의 '비밀성'이란 절대적 비밀성이 아니라 상대적 비밀성을 의미함을 판시하고 있는 사건이다.

---

이 사건에서와 같이 어떤 기업이 그 고객에게 공개한 정보라 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